

임실군의회 제 314회 임시회에서 심의·의결된 「임실군의회 모범공무원 표창규칙」을 이에 공포한다.

## 임실군의회 의장



2022년 1월12일

임실군의회 규칙 제21호

### 임실군의회 모범공무원 표창규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「임실군의회 포상규칙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 대상공무원 중 그 공적이 특수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표창대상)** 임실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.

1. 의회 발전에 공헌이 뚜렷한 자
2. 행정실적을 현저히 거양한 자
3. 창의, 제안으로 의정 발전에 공헌한 자

**제3조(표창방법)** 표창은 상패를 주되, 「임실군의회 포상규칙」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 “별지 제1호서식”에 의한다.

**제4조(표창절차)**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표창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의회사무과장은 규칙 “별지 제5호서식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표창예정일 15일전에 임실군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에게 상

신한다.

② 표창은 임실군의회 포상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해야 한다.

**제5조(표창시기 및 인원)** 표창은 매년 12월말에 시행하고, 표창인원은 연 1인으로 한다.

**제6조(표창자 우대)** 이 규칙에 의해 표창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우대한다.

1. 상급 기관의 표창에 우선추천
2. 승진서열 5배수 내에서 우선 승진
3. 선진지 견학자로 우선선발

**제7조(상여금 지급)** ① 이 규칙에 의하여 표창을 받은 자는 상여금을 지급한다.

② 상여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「모범공무원규정」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 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.

③ 상여금의 지급일은 매달 당해 공무원의 봉급지급일로 한다.

**제8조(상여금증서 교부)** 상여금의 지급을 받는 자에게는 “별지 제1호서식”의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.

**제9조(상여금지급의 중지 등)** ① 상여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한다.

1. 퇴직 또는 면직된 때
2. 징계처분을 받은 때
3. 직위 해제된 때
4. 기타 모범공무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상여금의 계속지급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

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때에는 의장은 그 사실을 관계부서에 지시하고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.

**제10조(상여금의 소급지급)**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이 중지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다시 직위를 부여받은 때에는 그 지급이 중지된 기간의 상여금의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제 호

## 상 여 금 증 서

소 속 :

직성명 :

위 사람은 20 년도 모범공무원으로 「임실군의회 모범공무원 표창 규칙」에 따라 이 증서를 수여함.

지 급 액 : 금 원

20 년 월 일부터

지급기간

20 년 월 일까지

20 년 월 일

임실군의회 의장